

축산물을 둘러싼 무역체계의 변화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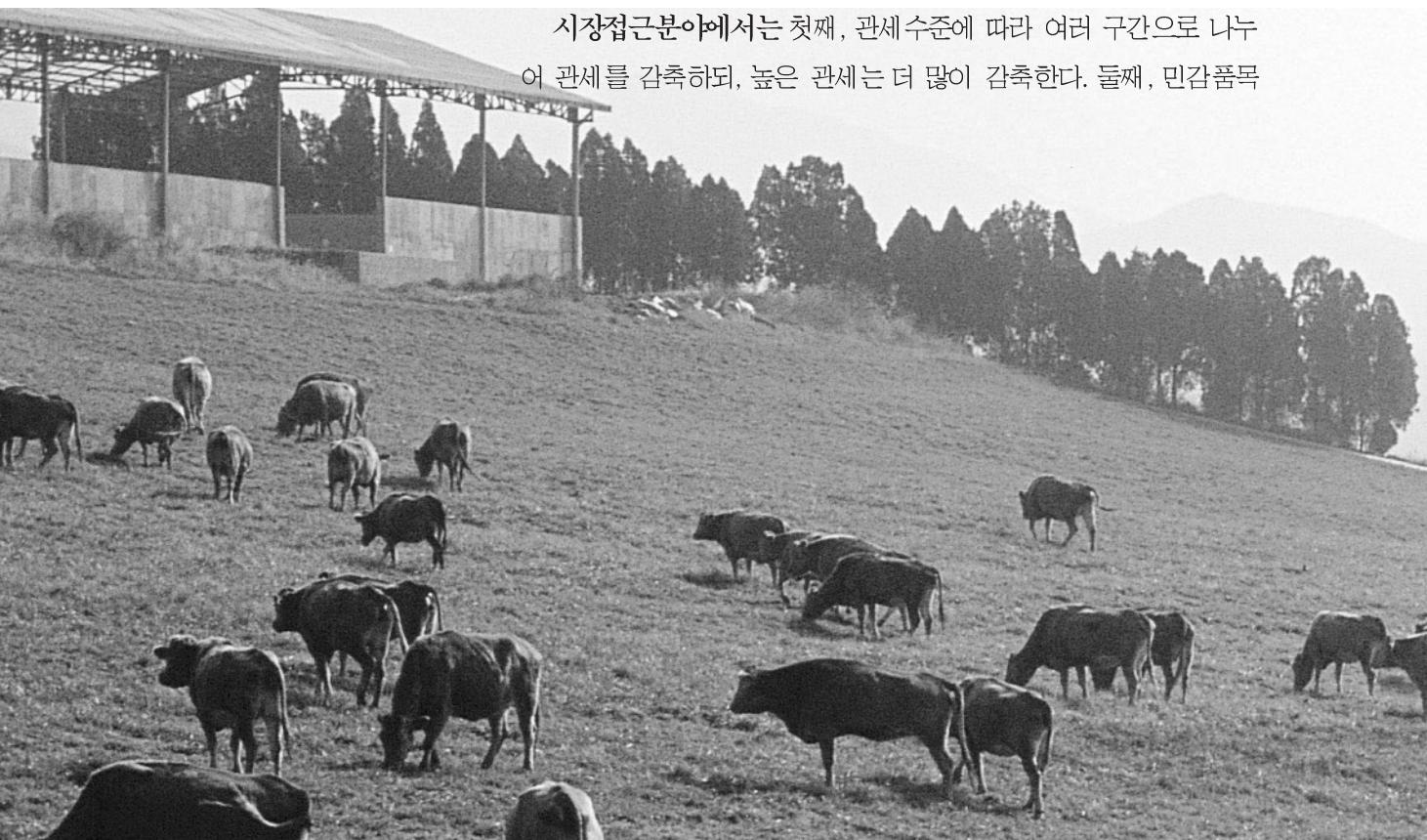
연구위원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WTO/DDA협상 현황

UR협상 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2001년 11월 DDA 협상이 출범되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협상의 기본골격을 정하는 초안이 나왔으나 실패하고, 2004년 8월 1일 WTO 이사회에서 가까스로 기본골격을 채택한 바 있다. 기본골격 채택 이후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2004년 8월 채택된 기본골격의 주요 내용은 시장접근분야와 국내 보조분야 그리고 수출경쟁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장접근분야에서는 첫째, 관세수준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관세를 감축하되, 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한다. 둘째, 민감품목



의 관세 감축에는 신축성을 두기로 하되 저율관세수입률량(Tariff Rate Quota: TRQ)을 증량한다. 셋째, 개도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감축률, 이행기간 등에 대해 우대하며, 특별품목은 관세감축에 보다 많은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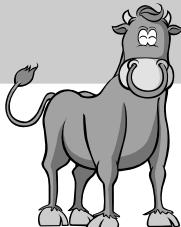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종량세의 종가상당치 계산방식이 2005년 5월 합의됨에 따라 최근 시장접근분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본골격에서 구간대별 관세감축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세를 관세구간대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종량세의 크기를 종가세로 환산하는 종가상당치 계산이 필요하다. 그동안 그 계산방식에 있어서도 국가간 차이를 보여 왔었다.

국내보조분야에서는 첫째, 무역왜곡보조가 많을수록 더 큰 폭으로 감축하고 이행 첫해에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20%를 감축한다. 둘째, 생산을 제한하는 제도 하에서의 직접지불을 허용하는 소위 블루박스(Blue Box) 보조금의 지급한도를 농업총생산액의 5%로 규정하고 생산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Blue Box를 도입한다. 셋째, 최소허용보조(De-minimis)는 감축을 원칙으로 하되, 개도국에는 특별대우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파급영향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수출경쟁분야에서는 첫째, 수출보조를 협상에서 합의하는 날짜까지 폐지하며, 수출신용이나 식량보조 등에 대해서도 규제한다. 둘째, 개도국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업협상에 있어서 각국들이 각자 의견을 내기보다는 입장을 같이 하는 몇몇 국가들이 그룹을 이루어 협상에 임한다. 주요 그룹으로는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Caims) 그룹과 G-5 등, 수입국 그룹인 MF6, G-10 등이 대표적이며, 개도국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룹으로는 강





경개도국 그룹인 G-20 이외에도 특별품목 그룹인 G-33과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 국가가 포함된 G-90 그룹이 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의 77개 국가로 구성되어 EC와 특혜적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ACP그룹이 있다. 우리나라 MF6와 G-10, G-33에 참여하고 있다.

홍콩 각료회의 결과, DDA 농업협상은 2006년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시장접근 분야(관세율 구간, 관세 감축률 및 상한, 민감 및 특별품목 지정 등)에 대해 미국, EU, G20, G10 등에서 제안한 협상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6년 협상이 타결된다면, 2008년부터 10년간 관세감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미국, EU, G20이 제안한 관세 감축률과 민감품목의 개수 설정이 핵심 쟁점사항이다.

현재까지도 주요 그룹간 쟁점별 공조 및 대립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 2일에는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인 G-10 각료회의에서 협상과정의 투명성,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on Tariff Concerns: NTC) 반영, 점진적인 관세 감축,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등을 강조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2005년 6월12일에는 G-33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긴급수입제한제도(Special Safeguard Measurement: SSM)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12월에 있었던 홍콩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점을 재차 확인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아울러 협상 마무리를 위한 모델리티를 2006년 4월 30일까지 마련하고, 각 국이 이행 계획서를 2006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렇지만, 미국, EC, 인도, 브라질, 호주로 구성된 주요 5개국 위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강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의 FTA 추진 현황

FTA란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이다. WTO가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무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다자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양자주의 무역체제이다.

WTO체제에서 FTA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s: EU)처럼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처럼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이제 FTA는 WTO/DDA협상과 함께 개방화의 양축을 구성하여 진행될 것이다.

FTA체결은 세계적인 조류이지만, 체결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부문간 희비가 교차된다. 상대가 일본이라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조업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중국이라면 제조업 등에서 이익이 기대되는 반면 농업부문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처음 FTA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칠레부터이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의 발효 및 2004년 11월 한·싱가포르 FTA의 실질적인 타결에 이어, 현재 일본, 유럽 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EFTA), ASEAN과는 FTA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2005년 말까지 EFTA와 협상타결 및 ASEAN과는 상품분야협상의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과의 FTA체결에 관해서는 현재 교착상태이지만,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타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진전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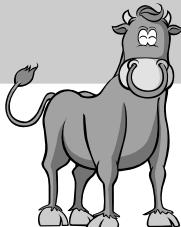
캐나다와는 2005년 중 2차례 FTA 예비협의를 거친 후 공식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2005년 5월6일에 있었던 공청회에 이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인도나 미국과는 이미 FTA를 체결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아직 사전협의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나라들도 많다. 멕시코 등과는 2005년 내에 협상개시에 합의하는 의견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으며, 남미 공동시장(Mercosur)과는 2005년 5월초부터 공동연구가 출범한 상태이다. 중국과는 2005년부터 2년간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005년 7월 국무총리가 중국 방문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로부터 FTA를 조속히 추진하자는 내용의 의견을 주고받은 바 있어 향후 빠른 진전이 예상된다.

□ 한·칠레 FTA체결과 한국축산업의 구조적 변화

▶ 한·칠레 FTA 체결의 주요내용

한-칠레 FTA협상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관한 중요한 특징은 민감한 품목인 사과와 배 그리고 쌀의 21개 세부품목을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 외의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을 관세 철폐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대신, 점진적 철폐와 일부 극히 민감한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칠레도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체 품목의 94.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 할당량(TRQ) 제공과 DDA 이후 재협상, 16년 내 관세철폐, 계절 관세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였고, 칠레 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계절 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은 포도 1개 품목이며, 10년간 11월에서 4월까지만 관세를 철폐한다. TRQ 품목에는 축산물 중 쇠고기와 닭고기, 유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400톤, 2,000 톤, 1,000톤의 할당량(Quota)이 정해졌다. 양적으로 그리 크지 않아 시장에서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축산물은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DDA 협상 이후 논의키로 한 품목 중 축산물은 돼지고기(냉동도체, 설육(부스러기 고기)), 오리, 분유, 버터, 계란, 난황, 꿀, 치즈(신선, 커드 등), 밀크, 크림, 녹용 등이다. 16년 내에 관세를 철폐 키로 한 축산물은 조제분유가 있으며, 7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한 것에는 칠면조 고기(TRQ 600톤 제공)가 포함된다.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한 것에는 말, 양, 닭, 칠면조, 기타 동물, 식용 설육, 알, 로얄제리, 뿔, 발굽, 사향 등이 있다. 종우, 종돈, 종계, 비계, 정액, 수정란, 배합 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호밀 등 224개 품목은 협정 발효와 함께 곧바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 한·칠레 FTA체결이 축산업에 미친 영향

칠레의 축산물 생산비는 그리 낮지 않다. 돼지고기를 예로 들어보면, 지육기준으로 이웃 아르헨티나가 한화 환산으로 kg당 578원, 브라질이 603원 정도인데 비해, 칠레는 775원 정도인

<표 1> 칠레의 돼지고기 생산 및 수출 동향, 1995-2005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육두수(천두)	1,489	2,465	2,750	3,100	3,200	-	-
생산량(천톤)	172.4	261.5	303.0	350.7	365.3	-	-
수출량(천톤)	2.1	13.0	24.6	45.6	61.6	-	-
한국수출량(천톤)	-	-	-	3.5	13.7	17.4	25.4
일본수출량(천톤)	-	7.6	11.2	22.6	29.6	-	-
수입량	0.8	1.9	0.3	0.6	0.2	-	-

자료 : ODEPA, 2004년은 칠레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량이며, 2005년은 농림부 자료 인용.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도 칠레산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 단가가 냉동 삼겹살 기준으로 kg당 256~298달러 정도 되어, 미국산보다 다소 높다. DDA협상결과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향후 10년 뒤에는 돼지고기 관세가 14%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무관세화 된다하더라도 대략 2달러 이상에서 수입될 것으로 판단된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5만톤 정도의 삼겹살과 목살 등을 수입하고 있는 만큼, 칠레산 돼지고기 가격이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양의 극히 일부 정도가 대체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표1 참조) 쇠고기나 닭고기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칠레의 축산업은 규모가 적어 칠레의 수출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육류의 소비패턴이 냉장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수송기간(45일 정도)을 감안하면 칠레산 냉장육의 수입확대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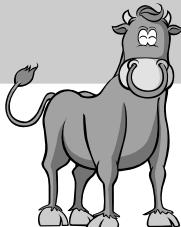
쇠고기, 닭고기의 경우, TRQ률량이 소량이어서 기존에 수입되고 있는 물량 내에서 수입선 전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장의 경우 국내 생산실적은 거의 없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분유는 TRQ 제공 없이 DDA협상 이후에 논의키로 하여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의 쇠고기 수입관세는 40% 정도이다. DDA협상에서 쇠고기 수입관세가 얼마로 인하되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대략 20% 이하로 내려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칠레 FTA에 의한 무관세와 WTO/DDA에 의한 관세의 차이 20% 정도가 있어, 이 차이에 대한 수입량 확대효과가 예상된다. 칠레는 쇠고기 분야에서 미국, 호주 등 경쟁국에 맞먹는 수준의 낮은 수출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품질면에서 다소 떨어져 당분간 큰 수입의 증가는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칠레가 위생문제와 품질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수출할 것을 결정한다면,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에서는, 칠레가 품질문제와 물량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칠레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수년 내 국내 시장의 32%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실제로 한·칠레간 FTA체결 이후 1년간 포도주와 돼지고기 수입액이 각각 151%와 64% 증가하였다. 돼지고기 총소비량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광우병 등으로 인해 수입쇠고기가 돼지고기로 상당부분 대체된 것을 감안하면, 국내 축산업 부문에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작다는 분석이다.



<표 2> 한국의 돼지고기 대칠레 수입 현황, 2000-04

(단위 : 천달러,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가율 (2004/2003)
돼지고기	전체	259,151	181,958	216,389	195,895	352,481	79.9
	대칠레 (비중)	–	–	6,380 (2.9)	30,237 (15.4)	54,725 (15.5)	81.0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www.kita.net)

구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돼지고기 소비량은 미국 광우병 발병에 따른 여파로 대체육류로써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였고, 2004년 4월 1일부터 각출된 양돈자조금을 이용한 돼지고기 소비촉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2003년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년 들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소비는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준이다.

2005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성돈 산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2004년보다 59.6% 증가한 17만 3,600톤(검역 기준)이었다.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4년보다 46.0% 증가한 2만 5,357톤이었으며 수입국들 중에서 미국 다음가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4년 돼지고기의 대칠레 수입은 2003년에 비해 81%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율이 79.9%에 달하고, 2005년의 경우에도 각각 46.0%, 59.6%로 나타나, 칠레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증가가 FTA의 효과만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우리나라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5년 14.6%, 2004년 15.5%로 FTA체결 이전인 2003년 19.8%보다 낮았다.(표 13 참조) 2004년 기준으로 부위별 수입량을 보면, 2003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이 냉동 삼겹살 14.7%, 냉동 기타 돼지고기 127.3%로 나타났다. 소해면 상뇌증(BSE) 등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 및 소비감소와 그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수요 증가가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곧바로 관세가 철폐된 사료곡물 분야에 대한 파급영향은 단미사료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배합사료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도입 대상국이 대체된다 하더라도 국제가격이나 국내 축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미사료 원료의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양이 칠레산으로 대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한국에 있어서 축산물 무역 관련 향후 과제

- ▶ 축산업에 유리한 방향의 협상전략 수립

DDA협상 중 축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시장접근분야라 할 수 있다. 제1 관세 구간은 상대적으로 저율관세 품목의 구간인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의 대부분이 관세율 18~40%(일부 닭고기 18%, 돼지고기 25%, 닭고기 20%, 쇠고기 40%)의 제1 관세 구간에 위치한다. 이 외에도 계란이 20~30% 미만 구간, 일부 낙농품이 30~40% 구간, 유장이 쇠고기와 같이 40~50% 구간, 육류통조림이 50~60% 구간에 포함된다. 제2 관세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축산물은 일부 육류통조림(72%)와 종우와 연유, 버터밀크(각 89%), 분유(176%), 꿀(243%) 등이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 동향으로 볼 때 특히 주요 축산물들이 해당 농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민감품목으로 선정¹⁾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낙농품은 수입이 급증한다 하더라도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 Guard: SSG) 발동을 할 수 없는 품목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축산물의 관세감축 폭을 낮추는 노력 이외에도, 협상에 있어서 수입 급증 시 구제조치가 매우 긴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해당 축산물에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SM)를 얻어내는 기초조건인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이후 SSM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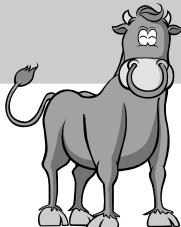
▶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 생산이력제의 확대 시행 및 각종 정보의 연계

광우병, 가금인플루엔자 등의 질병 발생으로 축산물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팽배해 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비자에게 해당 축산물이 누가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생산이력추적제이다.

생산이력체계 구축시 방역과 연계하여 정보의 역추적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물 생산이력추적제와는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브랜드 활성화사업이나 사료 및 종축, 질병방역관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고 모아진 각 기축 개체 또는 집단에 관한 정보가 모두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축산물생산 이전부터 생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추적시스템(Traceability)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축산물 중에서도 국내산 쇠고기에 국한하여 생산이력추적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확대하여 수입 쇠

1) 주요 축산물처럼 관세율이 높지 않은 품목은 구간별 관세감축방식에 따라 관세 감축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감품목으로 선정된다하더라도 TRQ를 신설 또는 증량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를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는 것 보다 불리해 질 수도 있다.



고기, 돼지, 양계산물 등 모든 축산물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유통의 투명화와 위생적 처리에 의한 소비자 신뢰 구축

국제적으로도 축산물 유통은 안전성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생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은 다소 덜었지만, 소비자에게 유통과정이 투명하고 위생적이라는 점을 믿게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축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적 개선 없이는 소비자신뢰 구축은 물론이고 유통비용의 절감도 꾀하기 어렵다.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내 종사자의 인식 전환과 정부의 유통개혁에 관한 확고한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수입산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와 생산이력추적제를 확대 시행하고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방역 관리와 유통추적시스템을 확고히 한 후, 지속적인 광고를 통하여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각인 시켜야 한다.

▶ 조사료 수입 대책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가축에 급여하는 조사료는 볏짚 위주여서 양질의 조사료 확보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조사료의 양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의 양에 비해 훨씬 많아, 조사료의 수입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조사료 수입의 확대에 대비하여 조사료 수입체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축우용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용 근채류(풀사료)에 대한 쿼터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식 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 전염병 방역 및 검역체계의 획기적 개선에 의한 외부적 수요충격 최소화

농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악성 전염병이 해외로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가축방역 및 검역조직을 강화하고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예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시급히 강화하여야 한다.

▶ 자조금의 효율적 이용에 의한 축산물 소비의 확대와 신시장 개척

자조금이란 생산자가 자신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금씩 돈을 모아 소비촉진과 관련 연구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이다. 자조금의 용도는 애초의 목적대로 소비홍보와 연구활동

에 국한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축산물 수입 개방의 확대에 따라 수입 물량이 점차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입업자들도 축산물 소비 흥보와 관련 연구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입업자를 자조금 사업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조성된 자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사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과 사료원료 수입제도의 개선

국내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의 비중은 매우 높다.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농가 소득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도 사료비 절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사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는 규모의 확대 또는 일회 구입 단위의 확대로 단위당 사료구입비를 절감하는 방법과 돼지의 사료효율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비용적으로 낭비되는 요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한편,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들 업체의 사료생산비용 절감을 통해서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사료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어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곧 축산물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곧 경쟁력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된 사료에 각종 관세와 세금 등을 붙이지만, 우리와 경쟁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축산물 수출국은 관세나 세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제도 개선과 아울러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을 조정해 줌으로써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영 합리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재 원료별로 특정 국가로 한정되어 있는 원료 수입국을 다변화하여 원료 수급 및 도입 가격에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